

안산시 도시관리계획(광장, 녹지, 공원) 결정(변경)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

의안
번호

1726

제출년월일 : 2008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가. 도시 관리계획 결정(변경)

- 안산시 광덕로 및 완충녹지 주변에는 도심을 관통하는 전철 4호선과 폭 100m의 광덕로로 인해 시민들의 정서적 공감대 단절과 접근성 결여
- 광덕로 변의 과도한 상가조성은 고잔 신도시 상권의 침체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이를 해소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음.
- 이에 상가 공실률이 가장 심각한 고잔 신도시 광덕로 주변을 우선적으로 사업구간으로 선정하여 내부 고객의 외부로의 유출을 막고, 외부에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을 늘려
- 안산시 전체 상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모색하던 중 '07. 1.19 건설교통부에서 공모한 “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”에 “광덕로·철로변 테마 공간 조성사업”으로 응모하여 전국 1위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원과 경기도비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,
- 2007. 3.12~2008. 1.11까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여 광덕로 및 중앙역과 고잔역 사이의 완충녹지를 활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및 테마 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완료하였음.
-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기존 제1호 완충녹지 일부를 근린공원으로, 기존 광로 1-5호선을 활용하여 광덕로 중앙의 도로위에 일반광장으로 중복결정을 하고자 하는 도시 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임.
- 따라서, 이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수립절차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공간시설

1) 광 장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1	광 장	일반광장	고잔동 800도 일원	-	중)49,997	49,997	-	광로1-5호 선과 중복 결정

■ 광장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광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광장 신설 - 면적 : 49,997㎡ 	광덕로 중심 구간에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 장소 마련 및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광로 1-5호선 도로를 일반광장으로 중복 결정(신설)

2) 녹 지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	녹 지	완충 녹지	원곡동, 원시동, 초지동 일원	605,564	감)58,861	546,703	안고 제1999-77호 (99.11.9)	

■ 녹지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완충녹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완충녹지 면적 감소 - 605,564㎡ → 546,703㎡ 	중앙역과 고잔역 구간 완충녹지 일부 구간을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완충녹지 면적 감소

3) 공원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			-	증)58,861	58,861		
신설	63	공원	근린공원	고잔동 680공 일원	-	증)24,269	24,269	-	
신설	64	공원	근린공원	고잔동 722공 일원	-	증)34,592	34,592	-	

■ 공원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63	공 원	• 근린공원 신설 - 면적 : 24,269㎡	중앙역과 고잔역 구간 완충녹지에 시민의 휴식과 여가 장소 마련 및 안산시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 공간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 신설
64	공 원	• 근린공원 신설 - 면적 : 34,592㎡	중앙역과 고잔역 구간 철로 변에 시민의 휴식과 여가 장소 마련 및 안산시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 공간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 신설

3. 검토의견

- 광덕로 및 완충녹지 테마 공간 조성사업은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중 3차 준공된 지역에 실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시책사업으로서,
- 광덕로에 일반광장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기준에 부합하고
- 왕복 8차선의 위치는 변경되었으나 차선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으로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상가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사료되며
- 또한 철로 변 완충녹지(폭 100m)를 일부 축소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철도안전 법 제45조 및 전체적인 안산 신도시 공원녹지 체계상 최소 3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반영이 완료된 사항임.
- 기대효과로는 차별화된 광덕로 테마 광장이 조성될 경우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의 동력과 상권정비를 통한 새로운 상업거점으로서 기존 지역상권으로의 파급효과가 미쳐 안산시 전체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4. 관계법령 말체내용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• 제28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⑤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• 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⑦법 제28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3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

가. 도로 중 주간선도로

라. 공원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)에 의한 어린이공원은 제외

첨부자료 : 도시 관리계획 시설(변경) 결정도 1부. 끝.

안산시의회 의견서

안산시 도시관리계획(광장, 녹지, 공원) 결정(변경)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함.

- 광덕로 및 완충녹지테마공간 조성 사업은 안산신도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타 시와 차별화된 테마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, 내·외부방문객의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주변에 주차장확보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기 바람. 또한 완충녹지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 바람.